

##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 다. 양자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 라. 당사국들 간 공동협력을 증진하는 것

### 제6.2조 일반 규정

당사국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6.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 제6.4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들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8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5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G/TBT/1/Rev. 12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

### 제6.6조 기술규정

1. 당사국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언급된 대로 모범규제관행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특히, 당사국들은 다음에 동의한다.

- 가.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하여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명한다. 그리고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그 경제운영자에게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정보와 적절한 경우 서면 지침을 제공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당사국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의 수용
- 나. 특정 기술 규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
-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과 자발적 인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의 채택
-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을 지정, 그리고
- 바.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당사국들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당사국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 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인증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관련 국제표준과의 준수 입증을 포함한 관련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당사국들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 인정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 제6.8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 등록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들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중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을 자국이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아니한 때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7.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당사국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sup>1</sup>을 허용한다.

## 제6.9조 협력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당사국들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다음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 그리고

나. 적합성 평가(예: 계량, 시험, 인증 및 인정)의 기술 기반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6.10조 표시 및 라벨링

1. 당사국들은 기술규정이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의 규정을 주목하고,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sup>1</sup>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2001년 11월 14일 결정(WT/MIN(01)/17)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및 우려 제5항에 따라,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특히 당사국들은 당사국이 제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 가. 그 당사국은 그 제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이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자국의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당사국들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특정 표시 또는 라벨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특정 표시 또는 라벨링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또는 생명, 환경 또는 국가안전에 대한 제품의 위험에 한정된다.
- 다. 그 당사국이 경제 운영자에게 대하여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급한다.
-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들이 수용한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마. 그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 규정에 따라,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6.11조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문서가 기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한다. 그리고
  - 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활동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보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당국이 인정, 지정 또는 위임된 기관과 통제 또는 감시의 대상인 경제 주체 간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그 인정, 지정 또는 위임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 제6.12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당사국들 간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처리
  - 라. 제6.9조에서 규정한 이니셔티브에서 당사국들 간 협력의 제고
  -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고된 협력을 위하여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
  - 바.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위한 절차의 촉진
  -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또는 국제 포럼에서 개발된 활동을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하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 자.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의 설치
  - 차.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국이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논의를 위한 부속작업반 설치 고려. 그러한 작업반의 회의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개최되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카.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그리고
  - 타.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의 수행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부속서 6-가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 조율하고 그러한 기관 및 인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 우편,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13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의 기간 내에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또는 당사국들이 수용 가능한 그 밖의 수단으로 전달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6-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제6.12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 접촉선이 주관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
  -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